

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운영 계획

전주북일초등학교

※ 본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운영 계획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상급 기관 지침, 학교장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1 목적

-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, '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'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

2 근거(법령 및 주요 지침)

- **교육과정 관련**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3조제2항(교육과정 등), 제24조제2항(수업 등)
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8조제4항(수업 운영방법 등)
 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20-225호)
 - 코로나19 관련 3차 휴업 연장에 따른 초등 교육과정(학습) 지원 방안(학교교육과-4466, 2020.3.24.)
 - 2020년 초등(특수)학교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 및 출결, 평가, 학생부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(학교교육과-5246, 2020.4.7.)
 - 초등학교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, 평가, 기록 가이드라인(2학기 이후)(학교교육과-12786, 2020.9.7.)
- **출결, 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관련**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5조(학교생활기록)
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제21조부터 제25조
 -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 훈령 제343호)

[교육부 훈령 제343호 [별표8] (출결상황관리 등)]

4.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(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) 수강학생 처리
가. **학교의 장**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(목)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**학적,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**

○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

- 학생 감염병 예방위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(교육부, 2016.12.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9-1판)(중앙방역대책본부, 2020.7.13.)
-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(제2-2판)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5244, 2020.7.16.)

3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

□ 기본 원칙
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

1단계	2단계	3단계
등교원격 수업	등교원격 수업	원격수업 또는 휴업
지역·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/3 밀집도 유지 권장	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(밀집도) 초등학교 1/3 유지	전국단위 조정(원칙)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

- 기초학력 보장, 심리·정서적 지원,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에 대비하여 **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**
- 구체적 등교 방안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역 여건, 구성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단위학교가 단력적으로 결정(학교공동체 의견 수렴)**
-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
- 코로나19에 따른 **등교중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** 등은 **코로나19 대응지침(중대본) 및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(교육부)**에 따라 실시
- 지침 및 지역·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**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**'에서 구체적인 사항 결정

학사운영 시 유의사항

-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**학교 시설의 이용제한**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, **등교수업 시 원격수업계획을 사전에 마련**
※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
※ **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교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, 지역 감염 등으로 학교·지역 단위로 등교 중지 시에만 실시함**
- 등교수업 시 **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,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**
- 수업·학습의 연속성 등 교육 효과성 제고,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방식 정하기 권장
- **(밀집도 대상 완화)**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,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**밀집도 최소화 기준에 미포함**

- (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)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, 심리·정서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연계되는 교육과정 운영

- 원격수업 시 기초학력지도: 수준별 개별 학습지 제공(유선연락으로 개별 피드백)
- 등교수업 시 기초학력지도: 제공된 학습지 확인 및 보충지도(피드백 제공)
- 맞춤형 학습지원: 강사활용 수업 지속(온라인 수업 시에도 지속)

- (밀집도 최소화) 등교수업 시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 방안 및 출입구, 특별실, 급식실, 복도, 화장실 등 공동이용 장소의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

- (밀접 접촉 최소화) 등교수업 시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, 학생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

- 일과시간 중에는 **마스크를 상시 착용**하고, **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**
- * '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및 '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(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)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침은 '유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준수

- (개인위생 교육 철저)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

- **창문 수시 개방, 조종례와 수업 전후 등 활용하여 책상 및 개인물품 소독**
- 마스크 착용, 손씻기, 기침 예절 지키기, 아플 때는 선생님께 바로 알리기, 의심 증상 발현 시 바로 말하기 등
- ※ 확진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급문화 만들기(집단 따돌림 방지 등)에 노력-**학교폭력예방교육 온오프라인으로 수시 실시**

□ 수업일수

- 1학기 온라인 개학 이후 등교 및 원격수업은 연간수업일수에 포함
- (1~3학년) 171일 이상, (4~6학년) 173일 이상
- 수업일수에 따른 상세 학사일정은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
- 등교·원격수업 방식 또는 학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전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

□ 등교·원격수업 병행 시 시간표 운영

- 학급별 기초 시간표대로 운영
 - ※ 원격수업 중 학생 관리, 피드백을 위하여 담임(전담)교사의 차시별로 운영
 - ※ 주제구성, 학습자료 준비, 공동콘텐츠 제작 등은 동학년 교사공동체에서 협의 및 제작
- 불가피한 경우 등교·원격수업 병행 기간에 한해 시간표 운영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자율적 결정

2020학년도 주간 교육활동 운영 계획(시간표)

활동내용							비고
학생등교시간 5~6학년(08:30~08:40), 3~4학년(08:40~08:50), 1~2학년(08:50~09:00) *열화상카메라 측정을 위해 등교시간을 분산시켜 운영함.							
학급별 아침활동시간(08:40~09:00): 학년별 등교시간에 따라 운영							
교시	1학년	2학년	3학년	4학년	5학년	6학년	비고
1	9:00~09:35	9:00~09:35	9:00~09:35	9:00~09:35	9:00~09:35	9:00~09:35	쉬는 시간 5분 씩
2	9:40~10:15	9:40~10:15	9:40~10:15	9:40~10:15	9:40~10:15	9:40~10:15	
3	10:20~11:30 (블럭)	10:20~10:55	10:20~11:30 (블럭)	10:20~10:55	10:20~11:30 (블럭)	10:20~10:55	
4		11:00~11:35		11:00~11:35		11:00~11:35	
5	점심 11:30~	점심 11:35~	5교시 11:35~12:10 수요일(5-6교시) 11:35~12:45	5교시 11:40~12:15 수요일(5-6교시) 11:40~12:50	11:35~12:45 (블럭) 수요일은 5교시 후 점심	11:40~12:50 (블럭) 수요일은 5교시 후 점심	<급식시간> 1학년-11:30 2학년-11:35 3학년-12:10 4학년-12:15 5학년-12:45 6학년-12:50
6	5교시 원격수업 (화, 수, 목)	5교시 원격수업 (화, 수, 목)	점심 12:10~ 수요일(12:45)	점심 12:15~ 수요일(12:50)			
					점심 12:45~ 수요일(12:10)	점심 12:50~ 수요일(12:15)	
하교 시간	하교 12:00	하교 12:15	하교 12:50	하교 12:55	하교 13:25	하교 13:30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년별 등하교, 수업 시간(블럭수업 및 35분 수업으로 학년별 밀집도 최소화), 급식 시간(학년별로 급식 시간 분리 운영) ○ 급식실 칸막이 설치(학년별 분산 급식으로 밀집도 최소화) ○ 도서관, 과학실 등 특별실 공동 사용 공간 운영하지 않음 ○ 쉬는 시간 확보 등 교원과 학생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종합적으로 고려 ○ 등교수업·원격수업 병행 운영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계획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(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문자메시지 등) - 학교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여부와 방법 결정 - 학생 개인의 선택에 의한 원격수업 병행은 금지(개인 맞춤형 원격수업 불가) 							

□ 학사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



4 교수·학습 운영

□ 수업 방식

- (수업방식 혁신)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, 원격수업 - 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(블렌디드 수업) 등 온·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
 - 1~2학년 원격수업: EBS 활용수업, 학급밴드에 학습영상 탑재 및 피드백
 - 1~2학년 등교수업: 교과수업 및 원격수업 내용 개별 피드백
 - 3~6학년 원격수업: 전복e학습터 활용 수업영상 제공 및 피드백 활동
 - 3~6학년 등교수업: 교과수업 및 원격수업 내용 개별 피드백

□ 교과 활동

< 사회적 거리두기 1, 2단계 >

- (교과 수업)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여,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
 - 등교수업 시 토의·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·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,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
- (방역 강화) 수준별 수업, 교과교실제 등 학교 내 이동 수업,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

<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>

-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,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·토론,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

□ 창의적 체험활동

<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>

구분	1·2단계	3단계
자율활동	• 교내 방송시설 활용, 불가피한 대면 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	• 수학여행, 수련활동 불가
동아리활동	•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•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,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	•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
봉사활동	• 외부기관 방문·대면 실내활동 자제	• 1회 이상 3단계로 격상된 지역의 경우 봉사시수 모두 인정 ※ 수해·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모두 인정
진로활동	•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	•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

< 사회적 거리두기 1, 2단계 >

- (자율활동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 활동 실시
 -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, 대면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참석인원, 행사 공간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- ※ 학급활동(학급회의, 담임선생님과 자체활동)안전교육·성교육·재난훈련 등
 - 대규모 단체 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조치를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 참여
 - ※ 수학여행, 수련활동, 학습발표회 등은 감염병 위기단계 '심각', '경계'인 경우 지양
- (동아리활동) 대면·비대면 방식,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,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
 -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,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등
 - 가급적 학교 외 활동을 자제하고,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 확보
- (봉사활동)
 -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자제,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권장,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
- (진로활동)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방법 및 유형*, 참석인원,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- * 진로체험유형: 강연·대화형, 현장견학형, 진로캠프형
 - 숙박형 프로그램은 자제하고, 가급적 비숙박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
 -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등교수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

<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>

- (공통) 비대면(원격수업)이 가능한 활동(동아리활동, 진로활동 등)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

□ 기타

○ (교외체험학습)

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<지침 추가 부분>
-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,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,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 경계’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
- ※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

○ (학생 상담 및 치유)

- 전문상담(교)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
- (격리학생 심리지원) 불안,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(Wee)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연계
-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.공감 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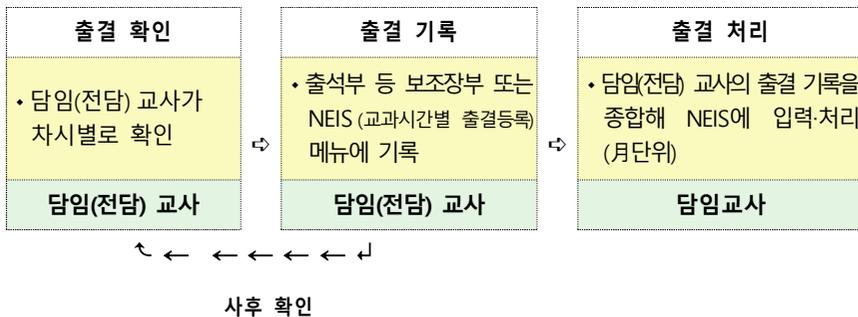
○ (소통강화)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·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·학생,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적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

5 **출결 관리**

[원격수업]

□ 기본 원칙

<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>



- (출결 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,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

- (출결 기록) 담임(전담)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(출석부)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(결과)으로 기록
-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
- (출결 처리) 담임(전담)교사의 출결 기록(출석부 등)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(7일) 단위로 종합하여 월(月)단위 출결(마감) 처리

【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】(학교교육과-12071, 2020.8.25.)

-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- *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(예: 홀수 번호 원격수업, 짝수번호 등교수업)
-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(출석인정 결석 처리)
-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
□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·인정 방법

<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>

수업 유형	출석 확인 방법								
	실시간	LMS 활용 방법*					기타(대체확인)		
		교사 확인	학습 시작일	진도율	접속 기록	학습 시간	산출물 탑재	SNS	메시지 유선
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	○			○			○	○	○
과제 수행 기타(학교)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확인(인정) 기간	당일	당일 또는 1주일(7일)내,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인정 기간							

* e학습터, ebs클래스, 클래스팅, 네이버밴드, 카카오톡 등

** 과제물, 학부모 확인서 등

-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(전북e학습터, EBS활용)
 - (확인·인정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해 학습시작일, 진도율,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(인정)
 - 콘텐츠 활용 기간(출석 확인 기간)은 1주일(7일)내로 설정·적용 가능
 - (대체 확인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, SNS, 유선전화, 문자메시지 등 활용
- 과제 수행 중심 수업
 - (확인·인정 방법)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,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
- 기타 유형 수업
 - (확인·인정 방법)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, 출석 인정 증빙 자료,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

□ 학생 관리

- (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) 학생의 장애,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- 현재 본교에 대체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없음.
 - * 장애학생, 지리적·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
 - **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, **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** 등과 함께 제출
- (등교중지 대상 학생)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 - * 확진 받은 학생, 격리통지 받은 학생(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),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
 - ※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내 증빙서류 제출 시 '질병 결석' 처리

[등교수업]

- ❖ 교육부훈령 제343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*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 - *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수정 알림(학교교육과-12402, 2020.8.31.)
- ※ 코로나19로 인해 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(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,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)하고,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- ※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,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'코로나19로 미등교(00일)'로 기재(장기결석해당)
- (등교중지 학생) 특정 학생이 「학교보건법」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석인정결석' 처리
 - 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
[등교중지 대상 학생]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(별지 제 22호 서식)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통지서
가족(동거인)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회전) 시까지	<p>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 <p>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등 ※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
[대상 학생별 정의]

※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(중대본, 교육부)이 개정되는 경우,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(기간, 등교재개 요건 등)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, 등교중지 기간은 '출석인정결석' 처리
 ※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- **확진 받은 학생:**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(코로나19)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**격리 통지 받은 학생:**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
- **가족(동거인)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:** 가족(동거인)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
- **임상증상 발현학생:**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

[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]

유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2-2판) [참고 9]

- (기본원칙)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·검사 받기
 -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
 - ※ 귀가 후 3~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
 - ※ (예시) 해열제 복용하여 6.7.(일)에 열이 내려가고, 6.8.(월)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
- (예외)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*을 보이는 경우 의사 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
 - * 기침, 콧물이나 코막힘, 설사에 한함
 -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(방문) 내역(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)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
 - ※ 단,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,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

- 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9-1판), 유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2-2판)
- 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'출석인정 결석' 또는 '질병결석' 처리
 - *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에 한함
 - 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([참고1] 참조)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
*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관심, 주의” 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
-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(거주지 및 민감)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- ※ **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**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: 학급담임이 대체학습지 제공 및 개별 피드백 활동

- (기타 미등교학생)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‘기타결석’ 처리
 - 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- ※ “심각, 경계”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신청 시 ‘출석안정 결석’ 처리 가능(9~10쪽 참고)
 - ※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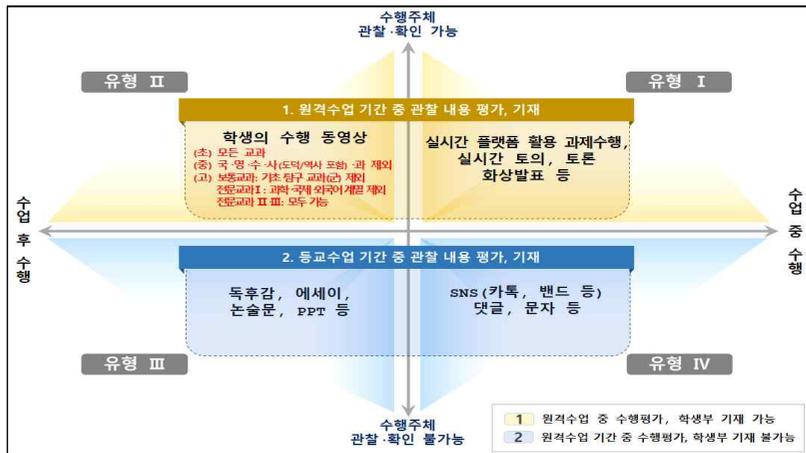
6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

□ 기본원칙

-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안은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

□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평가·학생부 기재 원칙

<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개념도>



※ 원격수업 학생평가 안내 자료집 탑재(학교교육과/업무마당/초등성장평가지/117번)

○ (유형 I) 수업 중 관찰·확인 가능형

-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
 - *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,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

- (예시 1) 실시간 쌍방향(화상) 수업 시 실시한 토의·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,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실시간 쌍방향(화상) 수업 시 실시한 발표 수행평가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,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I) 수업 후 관찰·확인 가능형

-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【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, 기록 가능 유형(II유형(동영상 제출) 교과(목)) 】

- (1학기) 예체능 과목만 가능
- (2학기) 모든 교과 가능

- (예시)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II) 수업 후 관찰·확인 불가형

-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*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* 에세이, 독후감, PPT, UCC 등
- 단, 등교수업(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)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- (예시) 등교수업에서 '토의·토론 방법'에 대해 지도하고,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·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·확인한 이해도,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V) 수업 중 관찰·확인 불가형

-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*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
 - * 실시간 채팅, 문자메시지, 댓글, SNS 메시지 등
- 단, 등교수업(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)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[학생평가]

□ 기본 원칙

- (학생평가)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 평가,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
- (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)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마련하고, 학생·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① 미 실시(사유작성) ② 등교 후 평가 실시(가능한 경우)
- (평가계획 조정)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, 평가횟수 조정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
※ 수립(변경)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에게 사전 안내
정보공시 탑재-학부모 공개 및 안내
- (결시생 성적처리)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결시생에 대한 관찰 가능 기회 확보 방안 등을 추가하여 처리-평가계에서 추후 반영 예정

□ 운영 방안

- 휴업 및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*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교과 세부특기사항은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
- * 원격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넘는 경우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가 협의하여 평가 미실시 결정

[학생부 기재]

□ 기본 원칙

- (학생부 기재)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
※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되,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
- (기재 내실화)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·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

□ 운영 방안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·기록 기준 >

구분		초등학교					
평가	1·2단계	· 수행평가 선택(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평가 미실시 가능)					
	3단계						
교과 세특	1·2·3 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의 모든 교과				
		기재 내용	교사가 관찰·평가한 내용 ※ (3단계 시) 교사가 관찰·평가한 내용 + 원격 수업 내용(포함 가능)				
창체	1·2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			
		기재 내용	정량자료 및 교사가 관찰·평가한 내용 ※ 관찰 가능 수업시간 확보				
	3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			
		기재 내용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자율활동</td> <td>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</td> </tr> <tr> <td>동아활동</td> <td>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 ※ (가능할 경우)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</td> </tr> <tr> <td>진로활동</td> <td>정량기록+원격수업 내용+대면/비대면(유선 포함) 진로상담 결과</td> </tr> </table>	자율활동	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	동아활동	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 ※ (가능할 경우)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
자율활동	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						
동아활동	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 ※ (가능할 경우)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						
진로활동	정량기록+원격수업 내용+대면/비대면(유선 포함) 진로상담 결과						
행특	1·2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			
		기재 내용	교사의 관찰·평가 내용, 상담 내용 ※ 실시간 온라인(유선 포함)으로 진행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				
3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				
	기재 내용	대면비대면(유선 포함) 관찰·평가 내용 (필요 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)					

< 사회적 거리두기 1, 2단계 >

- (교과활동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,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
- (창의적 체험활동)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(교사 관찰여부와 무관)
* 예) ① 기재요령(초등 69쪽) 참조, ② 원격수업에서 참여한 입학식 등 자율활동 시간과 등교수

- 업에서 실시한 자율활동 시간을 누가하여 기록 등
- ※ 교사의 관찰·평가를 통한 **정성적 기록**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
- (인적·학적·출결) '20. 3. 1.부터의 사항을 기재
 - ※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(특기사항 포함)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 - ※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, 내 부결재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필요
- (전·출입 시) 원격교에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학생의 출결상황 및 활동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<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>

- **교과 세부특기사항,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, 교사가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과 함께, '원격수업 내용'만을 학생부에 기재 가능토록 허용**
- ※ 1학기 내용은 1학기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고, 2학기 내용은 2학기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되, 3단계 기준 전면 적용 확정시에도 1~2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

* 원격수업 내용 기재 예시

- ❖ 교과세특: 원격수업을 통해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, 주장과 논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함.
- ❖ 자율활동: 원격수업 중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교육(2020.06.10., 2020.07.08.)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방안 및 학생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학습함.
- ❖ 동아리활동: (역사탐구반)(00시간)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함.

7 기대효과

- 코로나19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 수업권 보장과 학습 공백 최소화
-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, 출결관리, 학교생활기록부 작성,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

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등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요약

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

영역	주요내용
I. 추진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목적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가이드 라인 통합,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반영 ○ (적용 시기) 2020학년도 2학기 이후부터 별도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
III.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기본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교 수업일 최대한 확보 권장 ○ 학교의 구체적 등교 방안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단위학교가 결정 ○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○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,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최소화 기준에 미포함 □ 기본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 ○ 밀집도 최소화 ○ 밀접 접촉 최소화 ○ 개인위생 교육 □ 수업일수 : (1~3학년) 171일 이상, (4~6학년) 173일 이상 □ 시간표 운영 : 학급별 기초 시간표 운영 권장 [※표 참고] ○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적용(초등 5분 이내 단축. 별도 안내 시까지)
IV. 교수·학습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기본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업방식 혁신) 원격·등교수업 간 혼합수업(블렌디드 수업 등 온오프라인 연계한 방식 권장 ○ (역량함양 수업) 토의·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역량 함양 위한 수업방법 운영 활성화 □ 교과 활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과 성취기준 재구조화·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 예시 자료 안내[참고 3. 24쪽] <사회적 거리두기 1,2단계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 활성화,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 <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격수업 전면 전환 시, 다양한 원격수업 활용하여 학생 참여중심 수업 실시 ○ 등교수업 시 방역 강화 및 원격 수업 시 교사, 학생 간 소통 강화 □ 창의적 체험활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사회적 거리두기 1,2단계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자율활동)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활동 ○ (동아리활동) 대면·비대면 방식,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 통해 동아리활동 실시하고,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 조치 후 실시 ○ (봉사활동) 외부기관 방문 봉사활동 자제,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권장 ○ (진로활동)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유형 및 방법, 참석인원,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<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> (공통) 비대면(원격수업)이 가능한 활동(동아리활동, 진로활동 등)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

